

<p>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정한 건축조례 제18조제2항에는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6m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그 도로의 너비이상 접하도록 하고,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와 완화할 수 있는 도로 너비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p> <p>둘째,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인 경우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p> <p>셋째, 도시설계지구, 도심계개발구역, 상세계획구역안의 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이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1,000퍼센트이하,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1,000퍼센트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900퍼센트이하, 주준거지역 안에서는 7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이하로 한다”라고 개정하여 용적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p> <p>넷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 피어야 할 대상 건축물의 거준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p> <p>다섯째, 건축기준의 완화에 있어서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제53조의 규정을 추가하여 형성성을 제고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p> <p>기타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 조례시행</p>	<p>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p> <p>등 조례안은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97.11.12. 개최된 제9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p> <p>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p> <p>○議長 文一權 그러면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제안설명한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6미터 이상”을 “그 도로의 너비 이상”으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th> <th colspan="2">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th> <th colspan="2">완화할 수 있는 도로 너비의 범위</th> </tr> <tr> <th>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너비</th> <th>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th> <th>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 너비</th> <th>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th> </tr> </thead> <tbody> <tr> <td>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td> <td>8미터 이상</td> <td>12미터 이상</td> <td>6미터 이상</td> <td></td> </tr> <tr> <td>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td> <td>10미터 미만</td> <td>14미터 이상</td> <td>8미터 이상</td> <td>12미터 이상</td> </tr> <tr> <td>3천제곱미터 이상</td> <td>12미터 이상</td> <td>16미터 이상</td> <td>10미터 이상</td> <td>14미터 이상</td> </tr> </tbody> </table>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		완화할 수 있는 도로 너비의 범위		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너비	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	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 너비	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6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10미터 미만	14미터 이상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6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14미터 이상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		완화할 수 있는 도로 너비의 범위																									
	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너비	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	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 너비	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6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10미터 미만	14미터 이상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6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14미터 이상																								
<p>제21조제12호중 “구위원회”를 “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지정·공고한 구역안의”를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p>		<p>한·차고와”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7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를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p>																										

제56조제2호중 “외벽 각 부분”을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으로 하고, 표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층의 외벽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란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란 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1호중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적률”을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제52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 '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1. '98市有財産管理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57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과 의사일정 제20항 '98市有財産管理計劃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盧載東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載東議員 財務經濟委員會 盧載東議員입니다.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한 '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과 '98市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노인종합복지관·청소년회관 건립부지 및 영빈관으로 활용할 재산매입,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재산 기부채납, 주택조합 건설부지 내 토지를 동 조합에 매각하고, 삼풍백화점 부지를 기존의 계약자에게 매각하며, 서울市와 文化體育部間的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으로, 이 중 취득재산인 中區 藝場洞 2-20 외 2필지의 취득사유를 영빈관으로 활용함에 있어 공용의 청사 등으로 용도를 정정하고, 參席委員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市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소방파출소 노후청사 개축 및 한강 도강용 노후선박을 대체 건조하는 내용으로,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별도의 문제가 없으므로 參席委員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췌록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과 '98市有財産管理計劃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97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노인종합복지관·청소년회관 건립부지 및 영빈관으로 활용할 재산매입,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재산 기부채납, 주택조합내 토지 조합에 매각, 삼풍백화점 부지 기존 계약자에게 매각, 문화체육부와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7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관리계획 계상재산

○ 취득 10건

[토지 : 125필지 228,298.5㎡(69,059.9평)
건물 : 24동 31,979.5㎡(9,673.7평)]

○ 처분 3건-토지 66필지 60,166.2㎡
(18,200.1평)

(다음 페이지에 계속)